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 집 요 강



세종대학교

입학안내

☎ 02-3408-3456, 4455



목 차

I. 전형일정	1
II. 원서접수 안내	2
I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
IV.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4
V. 서류제출	9
VI. 전형방법	13
VII. 전형료	14
VIII. 지원자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	15
IX. 합격자 발표 및 등록, 환불 안내	17
X. 관련 양식	18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21. 7. 5(월) 10시 ~ 7. 8(목) 18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추후 공지
서류제출	2021. 7. 5(월) 10시 ~ 7. 9(금) 17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출력가능)를 대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등기우편으로 본교 입학과로 제출 - 주소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입학과(집현관 206호) - 등기우편은 7. 9(금) 국내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수험생 유의사항 및 고사장 안내	2021. 7. 19(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ejong.ac.kr)를 통해 안내 (개별 통보하지 않음)
영어 필답고사	2021. 7. 21(수) 10시 ~ (09시 30분까지 입실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지정장소 (신분증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할 것) ▶ 약 80분간 진행 예정이며, 중도에 퇴실할 수 없음
최초 합격자 발표	2021. 9. 7(화) 17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ejong.ac.kr)를 통해 발표 (개별 통보하지 않음)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21. 12. 17(금) 09시 ~ 12. 20(월) 1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고지서를 확인한 후 지정된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함 ▶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추가 합격자 발표	2021. 12. 20(월) ~ 12. 2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psi.sejong.ac.kr)를 통해 발표 (전화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추가합격자는 복수의 차수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며, 각 추가합격자 발표 차수별 발표일정 및 등록예치금 납 부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잔여 등록금 납부 (등록예치금을 제외한 금액)	2022. 2. 9(수) 09시 ~ 2. 11(금) 1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잔여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 후 지정된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함 ▶ 지정된 기간 내에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II 원서접수 안내

1.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sejong.ac.kr)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추후 공지) 접속 후,
"인터넷 원서접수"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수험생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함

▼
"세종대학교" 선택

▼
모집요강 및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자원한 모집단위의 변경 및
접수취소 등이 불가하므로, 전형료를 결제하기 전에
반드시 입력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단, 연락처는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변경 가능함)

▼
입학원서 작성 및 입력사항 확인



▼
전형료 결제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함

▼
원서접수 확인(수험번호 확인)



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입학원서 접수 마감시한[2021. 7. 8(목) 18시] 정각에 원서접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니 사전에 미리 접속하여 원서
입력 및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2. 수험표 출력

- 가. 전형료 결제 후 수험표 출력 창으로 자동 이동하며, '수험표 출력'을 클릭하여 수험표를 출력함
나. 지원자는 고사 당일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졸업예정자에
한함)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원서접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험표 출력' 메뉴를 통해 다시 출력할 수 있음
바. 출력한 수험표에 수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지원사항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가.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원서접수 시 나타나는 확인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 시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 원
서 접수절차를 진행해야 함
나.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형료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접수완료됨
다. 전형료 결제 이전에는 원서수정이 가능하나, 전형료 결제(입금) 후에는 원서의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유의
하여 작성해야 함
라.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수험생 본인의 증명사진(반명함판) 파일을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함 (* 배경이 있거나 스냅 촬영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앞의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00. 1. 1 이전
출생자의 경우 뒤의 일곱 자리는 5000000(남자), 6000000(여자)으로 입력하며, 2000. 1. 1 이후(1. 1 포함) 출생
자의 경우 뒤의 일곱 자리는 7000000(남자), 8000000(여자)으로 입력함.
바. 원서접수 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긴급한 경우 연락이 되도록 해야 하며 전화번호 오기, 타인 전화
번호 기재, 전화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사. 입학원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학허가를 취소함
아. 본인의 실수로 아이디, 비밀번호, 수험번호 등이 공개되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
음을 유의 바람
자. 입학 이후에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에 주요사항 누락, 위·변조 또는 허위 등의 사실이 밝혀져 입
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차. 입학전형 자료 및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수정·취소·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I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전 공	입학정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인원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외근무자의 자녀)
인문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27	2	32
		국제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국통상학전공	108	10	
		역사학과		18	1	
		교육학과		27	2	
	사회과학	행정학과		33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4	
	경영경제	경영학부		126	12	
		경제학과		44	4	
	호텔관광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외식경영학전공	122	12	
	법학부	법학전공		36	3	
자연	자연과학	수학통계학부	수학전공 응용통계학전공	49	4	교육여건과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함
		물리천문학과		59	5	
		화학과		45	4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실품생명공학전공 바이오융합공학전공 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148	14	
	전자정보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10	21	
	소프트웨어 융합	컴퓨터공학과		130	13	
		정보보호학과		30	3	
		소프트웨어학과		60	6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4	
		지능기전공학부	무인이동체공학전공 스마트기기공학전공	142	14	
		창의소프트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만화애니메이션전공	100	5	
	공과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5년제)	102	10	
		건설환경공학과		60	6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48	4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45	4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기계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	130	13	
		나노신소재공학과		90	9	
		양자원자력공학과		20	2	
예체능	예체능	회화과		36	-	모집하지 않음
		패션디자인학과		36	-	
		음악과		40	-	
		체육학과		36	-	
		무용과		36	-	
		영화예술학과		45	-	
계						46

* 상기 모집단위(전공) 및 입학정원은 학칙 및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 지정된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음

IV |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국내 12년 기준)을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모든 전형은 졸업학년도와 무관하게 지원가능

1. 자격요건

자격구분			자격 요건
정원 외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연속, 비연속 무관)
정원 무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자 ※ 부모의 국적 및 외국 거주(재직)기간과는 무관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해당되는 순수외국인은 지원이 불가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본교 국제교류센터 ☎ 02)3408-3973(한국어), 4406(영어), 3353(중국어)로 문의 바람

2. 세부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해외근무자의 자녀) 세부지원자격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해외 재학기간	• 고교 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해외근무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의미

-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 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1개 학년 3 term제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1,2 term을 이수시 1학기로, 2,3 term을 이수시 2학기로 인정함. 3개의 term을 모두 이수시에 1개 학년으로 인정함.

- 1개 학년 4 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1,2 quarter를 이수시 1학기로, 3,4 quarter를 이수시 2학기로 인정함. 4개의 quarter를 모두 이수시에 1개 학년으로 인정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0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0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0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0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해외 근무, 체류기간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기간의 시작	기간의 종료
근무기간	재직(경력)증명서상의 해외근무 발령일	재직(경력)증명서상의 해외근무 종료일
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의 「해외근무 확인서류」, 학생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함

* 재학 인정기간 중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후부터는 지원자와 친권자(부 또는 모)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됨
(단,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하거나 공동친권일 경우 양육권 보유자를 부 또는 모로 간주함)

* 현지 자영업자의 근무기간은 해당국 세금납부기간으로 적용하되,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상에 나타난 출입국 기록을 함께 고려하여 적용함

* 세금 납부 증빙서류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세부지원자격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하여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주)1} 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주)1}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3. 국내 · 외 학교의 학력, 재학기간, 교육과정 및 졸업 인정기준

가. 학력 인정기준

- 1)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소정의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만 인정함
※ 어린이집/유아원/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 · 외 비인가학교(대한민국 각 시 · 도 교육감 비인가 학교 포함), 국내 · 외 경정고시, 풀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을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의 경우 해외학교 학력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정규학력으로는 인정함
- 2) 해외 학교의 학력은 부모가 거주(근무)한 국가에 소재한 정규학교에서의 학력만을 인정함
단, 지역, 종교,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학하였을 경우에는 제3국 수학 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되, 인정여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결정함

나. 재학기간 및 교육과정 인정기준

- 1) 해외와 우리나라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 · 중 · 고 · 대학 과정(6년-3년-3년-4년)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재학기간을 산정하며, 최종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2년 2월 28일로 함
※ 단, 입학일이 4월인 국가(일본 등)에 소재한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2년 3월말까지를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2) 부정 · 편법 ·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3)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 · 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 · 중 · 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4) 해외 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중학교)로 전입 시 1학년 1학기로 신입학하였을 경우 직전의 해외 고등학교(중학교) 재학기간은 해외학교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5)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함

다. 졸업 인정기준

- 1)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 · 중 · 고등학교를 재학한 자라도 해외 고등학교(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로 전학하여 국내 초 · 중등 교육과정 12년에 상응하는 전체 교육과정을 마친 자
- 2)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해외에서 국내의 고등학교(각 시 · 도 교육감 인가 학교)로 전학하여 국내 초 · 중등 교육과정 12년에 상응하는 전체 교육과정을 마친 자

라. 학기 중복

1)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총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 락						A	A	A	A	누 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총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 락					A	A	A	A	누 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V 서류제출

1.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해외근무자의 자녀)

연 번	자격구분 제출서류	정원 외(2%)	비 고
		해외근무자의 자녀	
1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표	본교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제출하는 서류명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2		학력조회 동의서(분교 양식)	재학한 해외고교 수 만큼 작성 (초, 중학교는 작성할 필요 없음)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주)2}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제출 가능) ※ 재학증명서에 재학기간, 학년, 학기 명기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모두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공공기관, 인터넷 발급민원(정부)
7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해외 중·고교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종료일 명기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 모, 학생 모두 제출)	
9		여권 사본(부, 모, 학생 모두 제출)	
10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11		재외국민등록등본 및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 ^{주)3} (부, 모, 학생 모두 제출)	영사민원24, 해외주재영사관
12		해외근무 증빙서류(부, 모) ^{주)4}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주)2}
13	해당자만 제출	제3국 수학사유서	
14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주)5}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자격 미충족자 소명 신청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주)2}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 외교부(<http://www.0404.go.kr>)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메뉴 참고

^{주)3}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 :

- 여권에 날인 된 한국 및 체류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체류국가 내 체류자격이 명시된 사증(비자)란,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체류국 임대차 계약서, 체류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체류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주)4} 해외근무 증빙서류 : 외국기관 발행 서류는 해당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해외근무 증빙서류	해외파견 공무원	정부 발행 해외파견 기간이 표기된 재직(경력)증명서, 파견증명서
	해외파견 상사직원	본사 발행 해외파견 기간이 표기된 재직(경력)증명서, 해외지사 설치인증서(해외직접투자인증서)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정부초청장 또는 추천서, 재직(경력) 증명서 등
	현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외국정부 발행), 사업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현지 취업자	재직(경력)증명서 (재직기간 명시), 사업자등록증(외국정부 발행),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현지 법인근무자	재직(경력)증명서 (재직기간 명시),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정부 발행), 법인세 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선교사	파송증명서, 재직증명서, 재정증명서 등
	기타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해외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 그 외 필요한 경우 국적상실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주)5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이 친권자와 거주하였을 경우 (공동친권 제외)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수험생의 친권이 표시된 서류) 2.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상이한 경우 (또는 공동친권인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양육권판결문 1부 (양육비부당조서, 이혼조정조서, 이혼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 강제조정결정문 등 양육권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수험생의 친권이 표시된 서류) 2. 친권(또는 양육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친권(또는 양육권)이 없는 친부 또는 친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해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성립일 전까지 친권(또는 양육권)이 없는 친부 또는 친모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친권(또는 양육권)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계모 또는 계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해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혼 혼인성립일 부터 계모 또는 계부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 사망 후, 모 또는 부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부 또는 모 사망 후, 모 또는 부가 재혼한 경우	1. 지원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2. 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친부 또는 친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상기 서류 외 계모 또는 계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해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재혼 혼인성립일을 기준으로 계모 또는 계부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자의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연속 3년에 해당하는 기간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거주)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일 전까지 사망한 부 또는 모가 근무, 거주, 체류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연번	제출서류	자격구분	정원무관		비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인		
1	제출서류 목록표		●	●	● 본교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제출하는 서류명에 ✓ 체크)	
2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양식)		●	●	재학한 해외고교 수 만큼 작성 (초, 중학교는 작성할 필요 없음)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6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공공기관/ 인터넷 발급민원(정부)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	●		
8	여권 사본(학생)		●	●		
9	외국국적 증명서 (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			●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1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및 시군구청 발행	
12	고교졸업학력인정서 (또는 경정고시합격증명서)				각 시·도 교육청 발급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²⁾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 외교부(<http://www.0404.go.kr>)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메뉴 참고
* 그 외 필요한 경우 국적상실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 목록표(목록표 내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와 함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를 서류봉투 곁면에 부착하여 제출
- 나.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단, 외국의 발급서류는 외국에서의 재학 / 근무 / 거주 중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 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원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여 본교 입학처에 방문,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후 제출
2) 발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
3) 사본 제출자는 최종합격 후 사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입학일 전까지 입학처로 원본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상에는 해당기간(입학 · 졸업일, 전입 · 전출일, 입사일 · 퇴사일 · 근무기간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재학일자는 최소 월 단위까지는 기재되어야 함
※ 성적증명서에 졸업 또는 재학기간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가 졸업 또는 재학사실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음
- 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2)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3) 문의처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메뉴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7600,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02-720-8027
- 마.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제출함
- 바.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사. 부 · 모의 근무지가 아닌 제3국에서 수학한 자는 지역 · 종교 · 전쟁 등의 특성상 제3국 수학이 불가피하였음을 나타내는 제3국 수학사유서(증빙자료 포함) 1부를 첨부해야 함
- 아. 졸업예정자로 지원한 경우 최종합격 후 고교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입학일 이전까지 본교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제출)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을 받아 제출
- 자. 본교에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제출자 및 지원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입학사정대상에서 제외됨
- 차. 문서의 위 · 변조, 허위문서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 카. 입학전형 자료 및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절 공개 및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VI 전형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	전형일	비 고
영어 필답고사 100%	2021. 7.21(수) 오전 10시	- 고사시간 : 약 80분 - 문항 수 : 50문항 내외 ※ 전형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완료

2. 전형 시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해당 고사장, 수험생 유의사항 및 필답고사 응시요령 등을 확인하기 바람
- 나. 지원자는 수험표 및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고사에 임하기 바람
- 다. 수험표 분실 시 원서접수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험표 출력’ 메뉴를 통해 다시 출력할 수 있음
- 라.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입학자격을 박탈하며, 제출서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함
- 마. 고사에 결시한 자는 입학사정 대상에서 제외함
- 바. 표기한 답안은 고칠 수 없으며, 이중표기 · 낙서 · 답안을 고친 경우에는 해당문항은 ‘0’ 점 처리함
- 사. 고사실 내에는 전자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사전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아. 2022년 2월 졸업예정자가 본교 입학개시일 이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입학허가를 취소함
[단, 우리나라보다 졸업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에 소재한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2년 3월말까지 졸업 시 가능]
- 자. 모든 심의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름
- 차. 입학 후 제반 규정은 본교 학칙에 준함
- 카. 본 입학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준하여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함

3. 선발기준

- 가. 정원 외
- 1) 계열별 모집인원의 100%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지원자의 총점순에 따라 선발함
 - 2) 동점자 발생 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함
- 나. 정원무관 : 교육여건과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선발함
- 다.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

4. 서류심사

- 가. 지원자격에 관한 심사는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각종 제출서류에 관한 사실조회 등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되므로 일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 나. 지원자격 소명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입학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

VII 전형료
1. 전형료

구 분	지 원 자 격	전 형 료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해외근무자의 자녀)	157,000원
정원무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새터민)	7,000원

* 전형료에는 원서접수 수수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전형료 환불

가.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이후에는 지원사항을 취소할 수 없음

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후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답고사일 이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단, 서류제출 기간[2021. 7. 5(화) ~ 9(금)]내에 '입학원서' 와 '수급자 증명서[지원자기준]'를 제출한 자에 한함)

* 환불금액은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7,000원)를 제외한 금액임

다. 전형료 비례 환불 안내

-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2)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① 지원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② 본교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 3)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또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라. 원서접수 시 입력하는 '전형료 환불계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오류로 인해 환불불가 등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람

마.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전형의 응시자가 타 학교와의 전형일 충복,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VIII 지원자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

1.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 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포함)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는 포함되며, 산업대학·전문대학·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은 제외)
- 나.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은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 횟수로 산정함

2.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에 관한 사항

-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타 대학 및 본교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나.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에 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다.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추가(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신청을 완료한 후, 추가(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라.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마.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의 신입생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3. 기타 지원 시 유의사항

- 가. 모든 기재사항은 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누락·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나. 이미 제출한 원서와 제출서류는 수정·취소·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추천 절차(주무부장관·재외공관장·시도교육감)를 거치지 않으므로 지원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지참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제출 시 지원자의 학력, 해외거주, 체류, 재학 사실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함

4. 최종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 가. 최종합격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입학일 이전까지 본교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원서접수 시 사본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최종합격 후 원본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제출서류	구분	원서접수 시점에 졸업예정자	원서접수 이후 최종학기를 해외에서 재학해야 지원자격 충족하는 졸업예정자		원서접수 시점에 지원자격 충족한 졸업자
			해외근무자의 자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없음	●	●	●	추가 제출서류 없음
최종성적증명서		●	●	●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 (학생만)	
해외거주사실 증명서류*			● (부, 모, 학생)		
해외근무 증빙서류*			● (부, 모)		

* 「지원자격별 제출서류(p.9)」 참조

5. 모집단위 내 전공결정

학부로 입학한 경우 입학 후 학생 자신이 속한 모집단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공을 신청하고 학부성적에 따라 전공을 배정받을 수 있음

6. 장애 수험생에 대한 응시 편의 제공

- 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응시에 혼자한 지장이 있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본교에 통보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나.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7. 기타 안내사항

가. 기숙사 안내

- 1) 새날관 행복(공공)기숙사는 총 716명 규모의 기숙사로 침대, 책상, 옥실, 세탁실, 휴게실, 푸드코트, 편의점 등이 구비 되어 있으며 2인 1실 형태로 운영
- 2) 기숙사 홈페이지 (<http://happydorm.sejong.ac.kr>)를 통해 신입생은 1~2월 중 입사신청을 받으며, 거주기간은 4개월(학기), 6개월(반기) 중 선택
- 3) 공공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로 건립되어 저렴하게 운영
- 4) 신청 가능지역은 우선선발 지역(※서울 제외) 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

☞ 관련문의 : 기숙사 생활지도실 02-3143-8200 ~ 8203

나. 휴학

- 1)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이 허용되지 않음. 다만, 징집, 중병(4주 이상 입원치료)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음
- 2) 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으로 하며, 군휴학을 제외하고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문의 : 교무처 학적과 02-3408-3036 ~ 3038

IX 합격자 발표 및 등록, 환불 안내

1.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자 발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므로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개별 통보하지 않음)
- 나. 합격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합격통지서(등록금 고지서 포함) 등을 확인하여 등록예치금 및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합격자로 확정함

2. 등록기간

- 가. 최초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 2021.12.17(금) 09시 ~ 12.20(월) 14시 (4일간)
- 1) 등록예치금 납입고지서는 합격자 발표 시부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 2) 등록예치금을 2021.12.20(월) 14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나. 잔여등록금 납부 : 2022. 2. 9(수) 09시 ~ 2. 11(금) 16시 (3일간)
- ※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잔여등록금 및 자율적 경비 납부(금액은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였어도 기간 내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 합격을 취소함

3. 환불조건 및 절차

환불조건	• 이미 납입한 등록(예치)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포기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환불함	
환불절차	<p>①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sejong.ac.kr) 등록포기 메뉴에서 등록포기(예치금 환불)신청서를 작성 ② 원서접수 시 입력한 계좌로 등록(예치)금을 환불</p> <p>※ 자세한 절차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임</p>	
환불기간 및 유의사항	등록포기 신청기간	2021.12.17(월) 09시 ~ 12. 28(화) 16시
	등록(예치)금 환불기간	2021.12.21.(화), 12.23(목), 12.28(화)

4. 입학 이후 등록금 반환

- 가.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 나.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가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다.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본교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함

X	관련 양식
----------	--------------

제출서류 목록표

수험번호		지원자 성명	
지원 모집단위	학과(학부)		
비상연락처1		비상연락처2	
지원 자격구분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 재외국민 및 외국인(해외근무자의 자녀)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외국인)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번호	지원자격	제출서류명	제출여부(<input checked="" type="checkbox"/>)
1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해외근무자의자녀	학력조회 동의서 ※재학한 외국 고등학교 수 만큼 작성. 초·중학교 작성 필요 없음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에 재학기간, 학년, 학기 명기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자자녀: 부, 모, 학생 모두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학생만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해외근무자자녀: 부, 모, 학생 모두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학생만	
7		여권 사본 ※해외근무자자녀: 부, 모, 학생 모두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학생만	
8	해외근무자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9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해외 중·고교 재학 학년의 학기 개시일/종료일 명기	
10		재외국민등록등본 및 해외거주사실 증명 서류(부, 모, 학생 모두)	
11		해외근무 증빙서류(부, 모)	
12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국적 증명서(여권 또는 시민권 사본) [해당자만 제출]	
13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1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5		고교졸업학력인정서(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6	기타	제3국 수학사유서 [해당자만 제출]	
17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원자격 미충족자 소명 신청서 [해당자만 제출]	

*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서류 목록표(본 양식)와 함께 번호순으로 정렬하여 제출

* 외국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것

*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 제출자는 최종합격 후 입학일 전까지 입학처로 원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문서의 위·변조, 허위문서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한 때에는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LETTER OF CONSENT(학력조회 동의서)

(For verification of educational record)



SEJONG UNIVERSITY

209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06, Korea

Tel:+82-2-3408-3456 Fax:+82-2-3408-3556 E-mail: ipsi@sejong.ac.kr http://www.sejong.ac.kr

School Name _____

Address _____

Phone Number _____

To whom it may concern:

*(해외학교에 등록된 본인 이름)

We are pleased to have the following individual, _____, who transferred from your school, studying here at Sejong University. Your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are deeply appreciated and will be held in strict confidence. For your reference, please see the student's Letter of Consent.

If possible, a response from your office by fax will greatly help to expedite our processing of this individual's applic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Jin Woo Cho

Vice President, Office of Admission _____

LETTER OF CONSENT

To whom it may concern :

I have applied to Sejong University in Seoul, Korea for the 2022 academic year and agreed to allow Sejong University to officially request my academic records from previously attended school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full assistance to Sejong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s.

Written by applicant (지원자가 기록)		Verified by previously attended school (해외 학교 담당자가 기록)	
Date of birth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admission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Date of graduation (transfer to another school):	Month - Day - Year	<input type="checkbox"/> Correct	<input type="checkbox"/> Incorrect
Name and Signature(서명필수)	Additional comments		
Date	Signature and Title		

일자표기 Ex) 05 - 02 - 2022

Month - Day - Year

※ 외국에서 재학한 고등학교 수 만큼 작성 (노란색 배경부분만 지원자가 기록, 서명 필수)



세종대학교 2022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원자격 미충족자 소명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신청서를 작성 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소명자료는 공적증명서 및 공적서류(학교장, 교육부 발급 등)에 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인정 요청 사유 등을 토대로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심사 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지원 구분	() 해외근무자의 자녀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지원자격 미충족사유	() 지원자의 재학기간 () 지원자의 체류기간 () 기타 (내용 : _____)	() 해외근무자의 재학기간 () 해외근무자의 체류기간		

지원자격 일자	인정 희망기간 해당 학년/학기	소명 서류명	발급처	지원자격 요청 사유 ※최대한 자세히 작성 (<u>소재 국가명 등</u>)

위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신청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서명합니다.

2021 년 월 일

작성자 : _____ (서명 또는 인)